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9월 3일

나. 제 출 자: 강선영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0. 9. 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강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노인분들이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서구의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3)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3조)

4)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5)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5조)

6)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조부서: 어르신복지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0. 9. 4. ~ 9. 8.)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제정조례안은

-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해오신 노인세대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 제5조에서 제15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건강증진,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지원, 경로우대 시책, 경로행사 지원 등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보칙부분으로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의 위탁,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또한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게 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사업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노인복지사업은「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노인장기요양법」,「치매관리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또는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1]하고 있음.
- 강서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 87,020명(2020년 7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구(90,987명)에 이어 2위이고
- 전체인구 대비 비율로는 14.8%로 고령사회의 기준인 14%를 초과하였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1) 서울시 자치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또는 기본조례) 제정현황 : 2020. 8월 현재 서울시 22개구 제정 시행 중 (강서, 금천, 송파 제외) - 내용 및 규정 범위 등에 차이는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제정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1부.

참 고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